



## 경찰공무원 복무규정

[시행 2021. 1. 5.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

경찰청 (경무과) 02-3150-0750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영에서 "경찰기관"이란 「경찰공무원징계령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찰기관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1. 11.]

**제3조(기본강령)**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. 5.>

#### 1. 경찰사명

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, 국민의 생명 ·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,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.

#### 2. 경찰정신

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 · 봉사 · 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.

#### 3. 규율

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,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존중으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.

#### 4. 단결

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.

#### 5. 책임

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,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#### 6. 성실 · 청렴

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.

### 제2장 복무자세

**제4조(예절)** ①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.

② 경찰공무원은 상 · 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.

**제5조(용모 · 복장)** 경찰공무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6조(환경정돈)** 경찰공무원은 사무실과 그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 · 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일상행동)** 경찰공무원은 공 · 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,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.

1. 상 · 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 · 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.
2.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, 항상 명랑 · 활달하여야 한다.
3.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 제3장 복무등

**제8조(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)**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9조(근무시간중 음주금지)**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,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10조(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)**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11조(상관에 대한 신고)**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 · 승진 · 전보 · 파견 · 출장 · 연가 · 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보고 및 통보)** 경찰공무원은 치안상 필요한 상황의 보고 및 통보를 신속 · 정확 · 간결하게 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여행의 제한)**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1991. 7. 30., 2008. 11. 11., 2017. 7. 26.>

**제14조(비상소집)** ① 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경찰공무원을 긴급히 소집(이하 "비상소집"이라 한다)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의 요건 · 종류 ·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 <개정 1991. 7. 30., 1996. 8. 8., 2014.11.19., 2017.7.26>

**제15조(특수근무자의 근무수칙등)**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, 해양경찰청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, 경찰기동대의 대원 기타 특수근무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수칙 · 내무생활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1991. 7. 30., 1996. 8. 8., 2014.11.19., 2017.7.26>

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1. 7. 30., 1996. 8. 8., 2014.11.19., 2017.7.26>

### 제4장 사기진작 및 휴가등

**제16조(사기진작)**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· 고충처리 기타의 방법으로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건강관리)**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와 체력향상에 관한 보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 
② 경찰공무원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포상휴가)**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10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**제19조(연일근무자 등의 휴무)**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11.>

1.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
2.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

[제목개정 2008. 11. 11.]

## 제5장 보칙

제20조(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의 준용)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적용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1. 11.]

**부칙** <제31380호, 2021. 1. 5.>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